직원 권리에 관한 통지서
안전 휴가 및 병가

뉴욕시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제 근무 또는 전일제 근무로 사업체 또는 비영리 조직에서 근무하거나, 가사도우미로 뉴욕시의 가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기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안전 휴가 및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귀하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. 고용주는 귀하의 권리를 설명하는 본 통지서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
안전 휴가 및 병가 일수:

- 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한 해당 최대 총 **40시간**의 안전 휴가 및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.

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:

- **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**는 반드시 한 해당 최대 총 **56시간**의 안전 휴가 및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.

고용주의 역년: 고용 날짜(DOH) (첫 달) 부터 마 DOH 이후 364일) (지막 달) 까지

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비율로 안전 휴가 및 병가가 발생합니다.

다음의 경우 귀하에게는 **유급** 안전 휴가 및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- 고용주에게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.
- 고용주에게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지만 순수익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.
  (*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*)
- 가사도우미, 예를 들어 베이비시터, 가정부 또는 돌봄 노동자 등으로 어느 가정에 고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  참고: 가정에 고용된 가사도우미는 한 명 이상을 법적으로 보호합니다.

다음의 경우 귀하에게는 **무급** 안전 휴가 및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- 고용주에게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으며, 순수익이 1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.

사용하지 않은 안전 휴가 및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.

안전 휴가 및 병가 사용:

- 치료를 받거나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등 건강을 위해 사용하십시오.
- 아픈 가족이나 병원 예약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십시오.
- 공중 보건상의 응급 상황으로 인해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가 폐쇄될 때 사용하십시오.
- 가정 폭력, 원치 않는 성적 접촉, 스토킹 및 인신매매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귀하의 안전과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십시오.

고용주는 귀하에게 안전 휴가 및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 이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병원 예약이나 법정 심리 일정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.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의료상 응급 상황 등 안전 휴가 및 병가가 필요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귀하에게는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안전 휴가 및 병가를 사용한 이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고용주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.

근무일 기준 3일 넘게 연속으로 안전 휴가 또는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증빙 서류 준비에 든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. 증빙 서류는 귀하의 개인적인 의료상 또는 사적인 상황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*안* 됩니다.

안전 휴가 및 병가에 관한 필수 서면 개시:

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:

- 귀하에게 안전 휴가 및 병가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전 휴가 및 병가 정책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- 각 급여 기간에 현재까지 사용한 안전 휴가 및 병가 일수와 남아 있는 일수를 알려 줘야 합니다.

보복 행위 금지:

안전 휴가 및 병가를 요청 또는 사용하거나 위반 사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
NYC
Bill de Blasio
Mayor

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
Lorelei Salas
Commissioner

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(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)에 문의하십시오.

방문 **nyc.gov/workers** | 전화 **311** "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"에 대해 문의하십시오
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.